

▶상담대학원: www.smu.ac.kr/wac/exam/thesis05.do#tab6717

▶경영대학원: www.smu.ac.kr/mft/exam/paper05.do#tab6497

▶문화기술대학원: www.smu.ac.kr/gsct/thesis/thesis05.do#tab6410

라. 향후 학위청구(졸업)을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기에 논문(대체)연구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하며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1조(연구계획서) 의거), 입력하지 않는 경우 학위청구 심사신청 시 지장을 겪을 수 있음.

3.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

지도교수 배정상태	변경희망	신청구분	신청절차
A교수	A교수→B교수	1대1변경	대학원생이 샘물포털시스템→통합정보→학생기본 →졸업→논문(대체)지도교수변경요청에서 직접 신청하고 변경원을 출력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C교수, B교수	1대1변경	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C교수, D교수	1대1변경	
A교수	A교수→A교수, B교수	1대2변경	첨부파일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을 작성하여 현재 지도교수와 희망 지도교수에게 제출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B교수	2대1변경	
A교수, B교수	A교수, B교수→A교수	2대1변경	

4. 관련 규정

가. 대학원 학칙

제33조(지도교수) ①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(교육중점트랙 제외)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우리 대학교 비전임교원, 강사, 타교 전임교원 및 전문인사로서 논문지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 경력자가 논문지도를 하고자 할 경우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, 본교 전임교원과 공동으로 지도할 수 있다.
③지도교수는 적정한 지도학생을 유지하며,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은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④전공변경, 지도교수의 유고 및 논문주제의 변경 등 지도교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⑤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 만약, 지도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2년간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나.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

제41조(연구계획서) ①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차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연구계획서(논문, 작품발표, 연구보고서 등) 또는 학점추가이수 신청서를 학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지도교수를 거쳐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 및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 연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.

제42조(지도교수) ①대학원에서 학위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2차 학기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학기 초 1개월 이내에 대상자별 지도교수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②학과사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인의 교수가 공동 지도 할 수 있다. 이때 학칙 제33조 1항 및 2항을 따른다.
③현재의 지도교수가 동의할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절차는 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지도교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④지도교수는 석사과정, 학·석사 연계과정 및 박사과정생은 2개학기, 통합과정은 3개학기 논문(작품, 연구보고서)지도를 하여야 한다. 단, 학점추가 이수자는 예외로 한다.

- 붙임 1. 외부지도교수 공동지도 추천서 서식 1부.
2. 지도교수 변경원 서식 1부(지도교수를 2명→1명, 1명→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).
3. 대학원 학과(전공)사무실 전화번호부 1부. 끝.

2020.09.

대학원장
교육대학원장
상담대학원장
경영대학원장
문화기술대학원장